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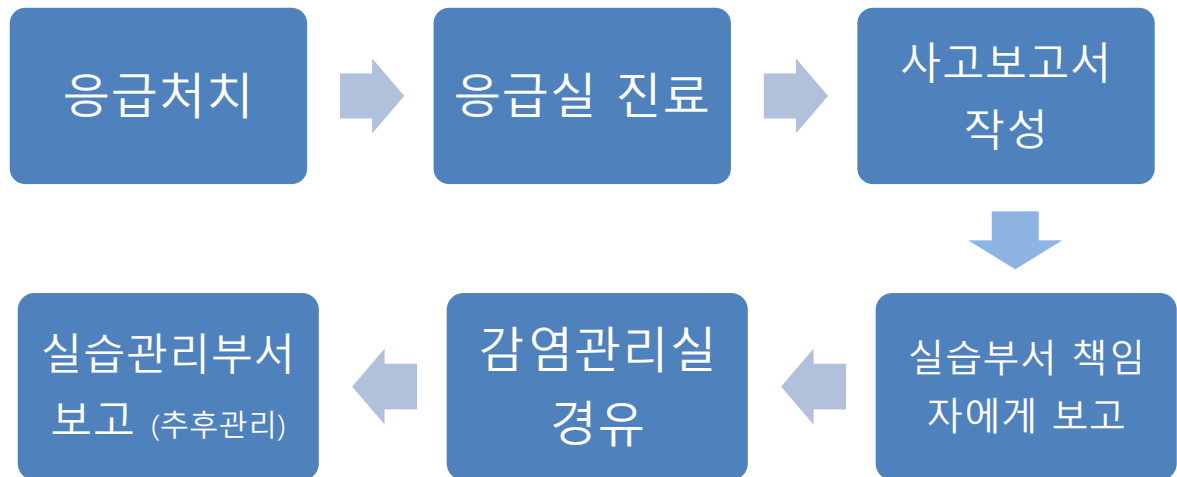
실습생 감염 관련 사고 발생 시 관리 절차

2023. 4

1. 정의

- 실습 관리부서 : 외부 실습생을 위탁 받아 실습 교육을 관리하는 부서
교학팀(아주대학교 의과대학), 아카데미팀(간호대학), 치과진료센터, 영양팀, 재활의학과, 영상의학과, 진단검사의학과, 건강증진센터 등
- 실습부서 : 실습생이 머무르면서 실습, 견학하는 원내의 부서, 실습부서의 책임자는 실습하고 있는 부서의 장을 말함(예. 간호학생-실습중인 부서의 파트장, 의대생-실습중인 임상과 책임교수)

2. 혈액, 체액 등에 노출된 경우 관리절차



3. 교직원 관리대상 감염성 질환의 종류

1) 감염력이 높아 공기 전파가 가능한 감염병

① 결핵

② 홍역

③ 수두

2) 접촉 전파가 가능한 법정감염병 (A형 간염 제외)

- ① 콜레라 ② 장티푸스 ③ 파라티푸스 ④ 세균성이질
- ⑤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

3) 비말 등의 경로로 원내 전파가 가능한 감염병

- ① 유행성 이하선염 ② 풍진 ③ 백일해 ④ 수막알균 감염
- 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(SFTS)

4) 해외 유입가능 중증 감염병

- ①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② 신종인플루엔자(계절인플루엔자와 구별)
- ③ 중동호흡기증후군(MERS) ④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(SARS)

5) 생물테러 감염병

- ① 탄저 ② 페스트 ③ 두창 ④ 보툴리눔 독소증
- ⑤ 바이러스성 출혈열(에볼라, 마버그, 라싸) ⑥ 야토병

6) 피부 기생충 질환

- ① 음

7) 안과적 감염병 (신고대상 아님)

- ① 유행성 각결막염

2. 실습생 감염성 질환 발병(의심)시 관리 절차

- 1) 실습생이 실습 기간 중 본원 또는 외부 의료기관에서 감염성질환을 진단(추정진단 포함)받은 경우 즉시 실습부서 책임자에게 보고한다.
- 2) 실습부서 책임자는 감염관리실에 발생상황을 신고한다. 해외유입가능 중증 감염병 또는 생물테러 감염병은 야간이나 공휴일 관계없이 감염관리실 직원에게 즉시 유선 신고한다.
- 3) 감염관리실은 기초 조사를 시행 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의료기관 내 접촉자 조사, 예방적 투약 등 조치를 취한다(구체적 내용은 질병 별 상이함).
- 4) 감염성 질환 발병(의심)자는 본원이나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, 의사 소견 및 감염관리실의 권고에 따라 실습제한, 자택격리 등의 조치를 받는다.
- 5) 감염성 질환 발병(의심)자는 추가적 조치(비용처리나 학사 관리 등)가 필요한 경우, 실습관리부서의 안내를 받는다.

3. 실습 중 관리대상 감염성 질환 노출(의심) 시 관리 절차

- 1) 실습 중 감염성 질환에 노출되었을 경우, 노출자는 즉시 실습부서 책임자에게 보고한다.
(가) 노출 보고대상
 - ① 혈액감염원 노출 시: 주사바늘에 찔림/자상 또는 점막이나 상처부위에 혈액이나 체액이 노출된 경우
 - ② 공기매개감염원 노출 시: 활동성 폐결핵, 홍역, 수두
 - ③ 비말감염원 노출 시: 유행성 이하선염, 풍진, 백일해, 수막알균,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, 이외 대유행중인 호흡기질환 (예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) 등
 - ④ 접촉감염원: 음 등
- 2) 실습부서 책임자는 감염관리실에 발생상황을 즉시 알린다.
- 3) 감염관리실에서는 해당 부서의 접촉자 조사, 필요한 진단검사 및 추적검사, 예방적 투약, 근무 제한 등의 필요 조치를 감염관리기준서 '균주별 감염관리'를 참조하여 시행한다.
- 4) 노출자는 추가적 조치(비용처리나 학사관리 등)가 필요한 경우, 실습관리부서의 안내를 받는다.